

#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·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3.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(2001.4.17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신영선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특정인에 대한 혜택부분·중복된 결격요건등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특정인에 대한 판매인 우선 지정을 완화하기 위함.(안 제7조제3항)
- 판매인의 의무중 증지보유량 규정의 비현실성을 반영(안 제10조 제2항)
- 판매인 지정취소 규정삭제 (안 제13조 제2항)
- 판매인 승계규정 삭제(안 제15조)
-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규정 삭제(안제15조)
-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 삭제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1971년 제정된 것으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

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조례임.

-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1985. 7.10일 개정된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와 현실성이 없는 판매인의 신고·장부비치·검사등의 조문을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부